



遺傳工學分野에서의 特許問題

A. Huni 記

〈스위스 CIBA-GEIGY社 特許部長〉

I. 一般的 考察

化學의 急速한 發達은 特許法에 의해서 더욱 促進되어 왔는데 이러한 特許法은 어떤 國家들에서는 化學發達初期에 이미 存在하였거나 그以後에 곧 導入되었던 것이다.

當時에 特許法의 많은 概念이 化學分野에 適用될 때에는 狀況에 따라 適切히 解釋되어 왔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生化學과 같은 關聯되면서도 獨立인 科學으로부터 惹起되는 一聯의 새로운 狀況에 特許法上의 概念을 適用하는데 關하여 拘束力있는 先例가 形成되어 왔음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特許法을 新技術分野에 適合한 解釋을 開放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特許制度가 新技術分野에 대해서는 아주 폐쇄적으로 되어 經濟的現實에 뒤떨어질 염려가 있다. 지금부터 遺傳工學分野에 있어서 研究開發成果에 대해 어떻게 特許制度를 適用시킬 것인가에 關해 몇가지 點을 論한다.

살아있는 有機體를 利用하는 프로세스나 살아있는 有機體自體가 特許될 수 있는 發明의 概念에 속하는 것으로 看做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根本 問題이다. 이 問題에 대한 解答은 發明의 法的 定義와 特許廳과 法院이 내리는 發明에 대한 解釋 如何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 自體가 살아있는 有機體를 形成하지 않거

나 利用하지 않거나 變形시키지 않는 遺傳工學의 新製品 및 프로세스는 이러한 基本問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新메우시리보核酸은 이러한 製品例의 하나인데 기존 發明카테고리內에서 쉽게 分類할 수 있으며 따라서 特許받을 수 있다.

特許性있는 發明의 概念에서 살아있는 有機體나 特定形態의 살아있는 有機體를 明白히 除外하는 法律規定의 適用을 받을 경우에는 根本問題에 대한 考察은 다음의 一般的考察로 부터 始作해야 한다.

1. 살아있는 有機體의 産業利用을 위한 特許 保護

微生物과 같은 살아있는 有機體의 産業利用은 古代로부터 있었다.

文明初期에 醱酵法이 廣範圍하게 利用되었다는 점만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半世紀에 걸쳐서 醱酵法에 의해 얻어진 프로세스의 수나 製品의 重要性은 놀라운 程度로 增大되었으며 그 한 例로서 醱酵에 의한 抗生物質의 開發을 들 수 있다. 醫藥은 특히 醱酵法의 發達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利用과 프로세스가 特許되지 말아야 한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利用은 化學反應法則 즉 自然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反應이 세포외적이거나 세포에 의한 것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利用과 프



로세스는 그것에 의한 製品과 함께 많은 國家에서 可能한 特許請求範圍內에서 條件없이 特許되어 왔다.

2. 有機體自體에 대한 特許保護

박테리아, 菌類, 이스트, 비루스, 動物이나 植物細胞系列, 原生動物이나 藻類같은 廣範圍한 意味에서의 微生物이거나 動物 혹은 植物이거나 간에 技術的 프로세스의 產物로서의 有機體의 地位는 어떠한가? 살아 있고 自然에 存在할 수 있기 때문에 產物이라는 通常의 法的概念에 屬하지 않는 것인가? 倫理的制限이 特許可能性을 排除하는 것인가? 特許可能性이 導德에 違背되는가?

法的인 觀點에서 보면 產物은 特許保護를 받기 위한 形態로서 人間의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看做되고 廣範圍한 意味의 技術에 屬하면 特許받을 資格이 있다. 遺傳工學에 의하여 變形된 有機體 特許 現在로서는 技術에 屬한다고 看做되는 有機體 例를들어 植物이나 微生物은 이러한 條件들을 充足시킬 수 있다.

遺傳工學의 結果가 自然에서 일어나지 않는 產物일 경우에는 自然物의 特許性問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遺傳工學의 產物이 例를들어 既存의 有機體로부터 抽出한 新 플라스미드와 같이 上記問題에 影響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最近의 見解에 따라 特許保護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單純히 發見된 것이 아니라 技術的 操作의 結果로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倫理的 反對에 대해서는 다음 事項들을 考慮해야 한다. 產物保護는 產物의 諸 利用의 保護總和으로써 이루어져 있다. 例를들어 微生物과 같은 特定有機體의 利用을 特許하는데 反對하는 양심적인 見解가 提起되지 않았다면 倫理的 觀點에서도 有機體自體에 대해서 產物保護를 얻는 것이 不可能할 하등의 理由가 없다. 그렇다면 當然히 進歩성과 같은 其他 特許要件을 充足해

야 한다는 條件뿐이다.

기껏해야 어느 程度의 特許保護力을 賦與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經濟的 面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先進國에서 化學合成物에 대한 產物保護를 認定하게 된 여러가지 考慮事項들이 遺傳工學分野의 產物保護에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研究에 投資하는 發明家나 研究機關은 其他 技術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遺傳工學分野에서도 同一한 特許保護를 받아야만 한다.

다른 技術分野도 마찬가지로지만 遺傳工學도 特殊한 경우에 社會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招來하면 다른 方法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公共의 利益이나 導德에 違背되는 特定類의 發明은 特許法上의 關係條文에 의해 特許保護에서 除外되나 單純히 發明이 遺傳工學의 範疇에 속한다는 理由만으로 除外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見解에 따라 高度의 工業國家에서 人間의 創作力에 의해서 얻어진 技術의 有用한 有機體 특히 廣範圍한 意味에서의 微生物은 단지 有機體라는 理由만으로는 特許保護에서 除外되지 않는다는 見解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個個의 特許法律을 제쳐놓고라도 이러한 見解의 代表的 例로서 美國, 西獨, 스위스의 最高法院이 내린 決定과 오스트렐리아와 캐나다 特許廳이 내린 決定을 들 수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不明確한 法的 狀況과 法院이나 特許廳의 決定이 일파되지 않음을 考慮해 볼 때 有機體自體에 대해 特許保護를 받을 수 있는 實際 可能性에 관한 明確하고 綜合的인 理解를 하기란 어렵다.

3. 製造프로세스를 再現可能토록 記述할 경우에만 特許保護

첫번째 主張에 의하면 產物特許請求는 原則적으로 產物自體와는 별도로 產物製造를 위한 프



로세스再現이 記述될 수 있을 경우에만 許容되며 例를들어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微生物寄託國際承認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하에 設立된 國際公認寄託機關에 有機體를 寄託, 公衆에 開放함으로써 그러한 說明을 대체할 수는 없다.

즉 特許請求가 有機體 自體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고 複製가 보장되는 寄託일지라도 再現可能性의 要件을 充足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傳統化學分野에서 通用되는 狀況에 根據한 것인데 傳統的 化學分野에서는 發明의 主材로서의 새로운 化合物은 自己複製의 이 아닌 이 物質의 寄託에 의해서가 아니라 製造프로세스에 의해 一般公衆에게도 利用可能해질 수 있다.

따라서 反復possible한 프로세스를 記述함으로써 利用可能性이 保障되어야 한다는 要件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特許消滅後에 實驗的 目的이나 其他 目的을 위해서 公衆이 自由로 利用할 수 있는 發明의 主材를 確保하는 公衆의 法的利益이 다른 용이한 方法으로 즉 公衆이 利用possible한 自己複製의 物質을 寄託함으로써 充足될 수 있는 새로운 分野가 생긴다면 프로세스의 再現可能性要件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特殊한 경우에 새로운 有機體가 이미 存在하는 어떤것의 發明의 結果에 불과하고 眞實한 發明이 아니라는 見解가 있으면 發明者는 그렇지 않은 理由의 說明을 要求당할 수 있다. 發明者는 그 有機體를 얻기위해 어떤 方法을 採擇해야 하는가와 特許받고자 하는 形態의 有機體가 產物로서 그 有機體를 얻기위해 使用되는 기존의 出發物質과 어떻게 다른가를 說明함으로써 이러한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다. 發明을 公衆이 利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記述에 관한 要件이요 記述에 寄託을 言及함으로써 充足될 수 있다. 오직 發明만이 存在하는가의 問題는 進歩性이나 新規성과 같은 其他 發明의 屬性이나 質에 관한 問題와

같이 發明의 質에 관한 問題이다. 有機體를 만든 사람의 成果는 製造의 成果와 같으므로 그 過程을 다른 사람이 再現할 수 있도록 說明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單純한 發見은 아니다. 重要한 것은 一般人이 認識하지 못한채 以前에 同一形態로 利用할 수 있었던 產物이 一般人에게 주의를 끌게 되었다는 事實 그 以上이 關聯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問題는 分明히 再現可能性이라는 하나의 概念에 “利用可能性”과 發見에 對應하는 “生産”이라는 두개의 概念을 不必要하게 그리고 不正確하게 包含시키기 때문에 일어난다.

게다가 出願에 있어서 再現possible한 生産方法의 記述는 寄託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見解는 同一國家에서 새로운 微生物을 出發物質로 使用하는 프로세스가 特許되어 왔으며 이러한 微生物의 確認과 利用可能性 즉 說明에 의한 使用再現可能性의 保障은 公認된 寄託機關에 微生物을 寄託하여 特定日로부터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어려움이 除去되었다는 事實과 分明히 相反되는 것이다.

例를들어 이들 나라에서는 플라스미드를 含有하는 有機體의 寄託은 플라스미드의 抽出을 위한 프로세스에서 그 有機體를 出發物質로 함을 說明하기에 充分할 것이나 同有機體가 同플라스미드로 有機體를 變形하여 만든 產物로서 請求된다면 寄託만으론 不足하다.

寄託에 의해 微生物을 利用possible함은 再現possible性的 要件을 充足시킨다는 見解를 갖는 사람들의 數가 增加하고 있는게 事實이다.

寄託이 이루어져서 利用possible성이 保障된 경우에는 有機體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누구도 프로세스를 反復하려 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再現possible한 프로세스의 說明을 固執한다는 것은 참으로 非現實적이다.

寄託에 의한 再現possible性要件의 充足이 認定되지 않는 限 自然界 특히 토양으로부터 分離해서



배양한 微生物에 대한 產物로서의 特許保護는 否定될 것이다.

正確한 自然界의 確認可能性 따라서 利用可能性이 없는 경우에는 說明만에 의해 이들 프로세스를 再現하기란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自己複製物質의 適合한 說明의 代案으로서 寄託이라는 새로운 法律制度에 관하여는 아직 論難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要件 즉 그러한 寄託物의 利用可能性을 未來에까지 保障해야 한다는 要件이 있다.

새로운 살아있는 有機體를 얻기위한 遺傳工學프로세스에서는 其他 살아있는 有機體특히 微生物이 出發物質로 흔히 使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技術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同一한 形態로 얻어질 수 있도록 生産方法이 文獻에 明確하게 說明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거나 寄託物에서 얻거나 아니면 科學者들로부터 入手할 수 있다.

이러한 有機體들은 大部分 特許出願에서 最終產物을 얻기위한 出發物質 또는 補助物로서 命名되는데 一般人이 利用 가능한 것으로 看做해야 하는가라는 問題와 그러한 有機體를 使用하는 모든 出願人이 부다페스트條約에 의해 秘密微生物에 대해 定해진 約 30年이라는 期間동안 寄託을 새로이 해야하는가의 問題가 일어난다.

4. 產物保護는 스트라스부르協約과 유럽特許協約節次에 準하는가

두번째 主張은 스트라스부르協約 第2條(b)와 유럽特許協約(EPC) 53條(b) 및 該當內國法이 微生物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와 關聯하여서 따라서 保護範圍를 制限해서만 產物特許請求를 許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主張은 스트라스부르協約2條(b)後段과 EPC 53條(b)를 限定的으로 解釋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EPC指針(CIV3.5)에서는 微生物의 特許可能

性을 認定면서도 “微生物學的 프로세스에 의해서 얻어진다면”이라고 同指針에 나와있듯이 微生物保護는 프로세스에 關係되는 것이라는 見解가 자주 나온다.

이와같이 產物保護를 프로세스에 限定하는 것은 EPC 55條(b)로부터 추론해서는 안된다. 이條項은 단지 微生物學分野의 發明이 同條項 처음部分의 但書規定에서 除外된다는 事實을 確認하는 것 뿐이다.

II. 特許面에서 본 遺傳工學分野의 特徵

1. 保護範圍에 관한 問題

傳統的 化學工業에서는 基礎物質製造 프로세스는 最終生產物과 量的으로 關聯하여 進行되어야 했으며 基礎物質은 該當量만큼만 準備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와 生產物에 대한 特許保護는 사실은 實際로 進行되는 프로세스와 工業의 規模로 生産되는 生產物을 恒常 망라하는 것이었다.

遺傳工學에서는 以前の 過程을 밝지 않더라도, 願하는 最終產物이나 結果를 未來에 生産하려면 複製만 하면되는 基礎物質을 얻기 위해서는 例를 들어 科學의 目的을 위해 願하는 遺傳物質과 벡터를 小量 準備해서 再組合 DNA에 小規模로 結合하고 이들을 小規模이지만 充分하게 박테리아에 옮겨 이들 群中에서 願하는 形質을 가진 단하나의 클로움을 選擇하면 足하다.

이 問題는 이러한 物質과 프로세스가 他人이 그 프로세스의 進行方法과 物質의 生産을 反復할 수 있도록 記述되지 않으면 오직 基礎物質이나 最終產物이 각각 公衆이 自由로 入手할 수 있도록 自己複製가 可能하게 公認된 寄託機關으로 寄託해야만 特許가 可能하다는 事實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最初의 發明者가 發明한 特殊 再組合 DNA를 利用한 中間微生物의 產物, 微生物 自體 및 알려진 폴리펩티드의 生産을 위한 利用을 特許에서 保護할 수 있다. 그러면 科學者는 中間微生物을 얻기 위해서는 特許에 記述된 프로세스를 實驗的으로 反復하거나 寄託機關에 寄託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微生物을 그냥 얻을 수 있다. 科學者는 폴리펩티드 生産을 위한 再組合 DNA를 分離해서 遺傳的 變形을 시켜 原來의 DNA構造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폴리펩티드 生産을 더욱 改善하는 보다 많은 情報를 含有하는 微生物을 만든다. 그리고 科學者는 이 새로 改良된 微生物을 寄託한다. 이러한 行爲는 科學的인 것이기 때문에 特許侵害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第3者가 特許保護를 받지 않는 이 새로운 微生物을 入手해서 原發明者나 特許權者 보다 싼값으로 상당히 낮은 效率로 그리고 工業的으로 폴리펩티드를 生産할 것이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 第3者는 最初發明者가 請求한 本來의 微生物生産프로세스나 微生物自體를 利用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가 生産을 全的으로 科學者에 의한 本來의 保護되어 있는 프로세스와 微生物의 利用에 그 根據를 두고는 있으나 實際로 自身이 이들을 利用한 것은 아니다.

물론 改良된 微生物을 폴리펩티드 生産을 위해 使用하는 것이 그 改良된 微生物內에는 그래도 DNA構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原發明의 特許請求를 侵害하는 것인가에 관한 問題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 및 其他 類似한 狀況을 考慮할 때 처음부터 特許出願人에게 特殊하고 制限的인 非基本的인 特性을 包含하지 않고 그 特殊한 創作의 DNA構造를 갖는 生成微生物群의 生産을 正當化해 주는 廣範圍請求를 認定하는 것이 合當한 것 같다.

부연하면 이러한 發明은 發明思想이 個個의 實現에는 過度한 努力이 必要하다 하더라도 具

體的으로 多數 實現될 수 있는 그러한 種類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發明家에게 그의 特許出願에 發明思想의 實施例를 더 들기 위해 通常의 作業量과는 比較가 되지 않는 作業量을 投入해야 한다고 期待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發明이 그 基礎를 두고 있는 特殊DNA構造를 갖는 DNA構成에 의해 特徵지워지는 生成微生物을 보다 高分類單位로 出願을 함에 있어서 發明思想은 現在로서는 오직 個個의 代表的인 것들만이 一般人에게 利用可能한 微生物에 관한 것이거나 少數의 個個 微生物에서 그것도 特殊DNA構造를 갖는 몇몇 DNA에로 實施되어 온 것이라는 事實에도 不拘하고 特許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分野와 關係한 特許慣行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發明者는 機能的으로 혹은 總括的인 方法으로 發明의 要素들을 請求하도록 許容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侵害의 경우에 새로운 DNA斷編을 갖는 特殊 DNA나 DNA斷編 그 自體 혹은 이들을 다같이 갖는 플라스미드나 微生物에 좁게 限定한 生成物, 프로세스 및 用途의 請求의 保護範圍를 法院이 擴張解釋하므로써만이 다른 DNA系列, 이들 斷編을 갖고 있으면서 그 特性을 나타내는 인위적으로 만든 플라스미드, 혹은 그러한 플라스미드를 갖는 다른 微生物을 包含하게 되어 發明者에게 正當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擴張解釋의 理由는 發明思想의 各 擴大具 現例에는 이 DNA斷編이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方法으로 새로운 플라스미드에 關聯한 請求로부터 나오는 保護는 이 플라스미드를 갖도록 되어있는 새로운 生成有機體와 이들의 生産 및 用途에도 擴大되어야 한다. 基本的인 一部 DNA同一性에 根據한 이러한 保護連繫는 生成微生物의 產物이 問題가 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2. 完全保護 以前の 公開에 관한 問題

예를 들어 EPC나 關聯特許法下에 많은 國家에서 發生하다시피 生産微生物을 生産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特許出願이 完全한 保護를 받음이 없이 公開되면 그 순간 競爭者는 프로세스 作業을 模倣해서 微生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競爭者는 기친 損害보다는 적은 適當한 補償을 求拂할 義務밖에는 없다. 만약 特許가 난 後에도 微生物이나 그 번식물을 利用하게 되면 競爭者는 이 프로세스는 今으로부터 行해져 왔으며 따라서 特許侵害行爲의 產物이 아니기 때문에 그 特定の 微生物클론과 그 번식물을 使用할 수 있다고 主張할 것이다.

예를 들어 發明者가 科學誌에 早期公開함으로써 出願에 대한 保護効力 發生前에 競爭者가 프로세스를 模倣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主張을 하려할 것이다.

3. 侵害證據에 관한 問題

위에 든 예에 있어서 特許侵害는 侵害物의 遺傳子를 分析하므로써 基本 DNA의 內容으로 決定될 수 있다.

알려진 DNA產物이나 이를 包含하는 生産微生物을 얻는 方法 혹은 一般의으로도 適用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遺傳子工學分野에서 特許받을 수 있다면 事態는 特許權者에게 더욱 어려워진다. 第3者는 이 프로세스를 한번만 少量으로 使用해야 하고 產物의 遺傳子에는 그 使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利用은 좀처럼 감시할 수 없다. 특히 어떤 國家에서는 立證責任이 轉換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一般의으로 應用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特許權者는 世界的으로 特許保護를 받지 않는 限 또 다른 側面의 어려운 立場에 처하게 된다. 어느 한 國家에서 保護되는 普遍的인 方法이 特許의 拘束을 받지 않는 國家에서 微生物生産에 利用

될 수 있으며 微生物醱酵에 의한 產物이 프로세스가 保護되는 國家로 輸入될 수 있다. 오직 微生物만이 그 方法에 의한 直接的 產物이기 때문에 醱酵產物의 輸入은 EPC64條와 關聯하여 EPC에 符合하는 法律下에서는 반드시 特許侵害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實施要件

遺傳工學的 方法은 그 產物이 産業的으로 利用되는 경우에는 더 以上 實施할 必要가 없다는 特殊한 狀況이 特許가 實施되고 있는가에 대한 評價問題를 惹起한다. 遺傳工學프로세스特許나 微生物에 대한 製品特許가 만약 同프로세스에 의해 일단 얻어진 微生物의 번식물이 産業的으로 利用될 때에도 實施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微生物이 遺傳工學프로세스에 의해 더욱 變形되고 이새로운 形態로 産業的으로 利用되지만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利用이 原特許의 實施라고 看做할 수 있는가? 이들 또한 個個 國家의 特許廳이나 法院이 解決해야할 問題이다.

5. 有用性證明에 관한 問題

EPC와는 對照的으로 어떤 國家에서는 특히 美國에서는 特許性의 前提要件으로 有用性이 要求된다. 遺傳工學的 產物이 人間에 대한 複雜한 效果를 期待하여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미 應用段階에서 임상실험으로 實際上的 有用性을 證明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出願이 動物實驗을 통해 그의 產物이 궁극적 利用可能性의 觀點에서 계속 研究할 가치가 있음을 立證하면 足하다.

6. 遺傳工學프로세스의 再現可能性에 관한 要件

遺傳工學分野에서의 프로세스는 오직 統計的 基準에 의해서만 再現이 可能하다고 定義되어진다. 프로세스가 能熟한 사람이 實施할 수있



도록 즉再現할 수 있을 정도로記述되어 있는 것으로看做할 수 있는가 하는問題가 야기된다.

이로부터遺傳工學의 프로세스가精密하면서도産業적으로 아주重要的 高度의 專門科學的實驗의 테두리 내에서實施된다는結論이 나온다. 이러한實驗에는適合한 資格있는 科學者가 있어야 하며該當實驗技術이 있어야 함을意味하며 따라서必須專門知識이 要求된다.

精密성에 관한 傳統的化學의 경우의 基準을 適用함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化學物質과 같이 正確하게 標準化하거나 分析할 수 없는 生物學的 物質이 利用되기 때문이다.

特許의 觀點에서 보면說明의 價値를 評價함에 있어서 이分野에서는 專門家의 實驗技術과當然히해야 하겠지만 當面하고 있는 特殊狀況下에 要素들에說明內容을 適用如何에 따라서 많은 價値가 부여된다.

7. 特許保護에 영향을 주는 早期公開에 대한 猶豫期間

遺傳工學이라는 새로운分野에서의發展은 다른 어떤分野보다도大部分 大學에서 研究하는 科學者들의 노고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科學者들은 가능한 限 빨리 研究結果를 發表하거나 다른 科學者들에게 알리고 싶어한다. 또한 이들은 研究結果가 特許받을 수 있는 主材를 包含하고 있거나 特許保護가 經濟的 理由로 그 結果를 實用化하도록 더욱 더發展시키는 要素가 된다는 것을 모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重要的 分野에서의發展이 가능한 限 많이 特許保護를 받도록 하기위해 早期公開에 대한 猶豫期間이 汎世界的으로 特許法에 規定되어야 한다. 이러한 猶豫期間의 効力은 特許出願이 猶豫期間終了前에 提出된다면 特許possible 研究結果의 早期公開는 그 후 發明者나 發明에 대해 權利를 갖고 있는 者에 의해 提出된

特許出願에 대한 先行技術이 되지 않는데 있다. 猶豫期間의 利益은 파리協約下에 優先權主張을 할 수 있는 모든 他國家에서의 特許出願에도 擴大適用되어야 한다. 猶豫期間의 必要性에 관해서는 美國, 캐나다, 日本 및 開途國을 위한發明에 관한 WIPO 모델法(Section 114 (3) and(4)에 이미 여러가지 形態의 猶豫期間이 있음을 상기해와야 한다. 또한 猶豫期間의 必要性은 부에 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IAPIP 總會에 의해서 原則적으로 確認되었으며 最近에 많은 著者들이 主張해왔다.

意味있는 猶豫期間이 一惡用이나 國際展示會에서의 展示의 경우는 제쳐놓고라도 불행하게도 스트라스부르協約과 EPC 下에서는 設定되지 않았다. 그래서 西獨, 英國 및 이탈리아와 같이 法律에 廣範圍한 留保條項을 갖고있던 國家들은 留保條項을 폐지하고 EPC 規定을 採擇했다.

III. 未來의 展望

研究에의 投資를 장려할 効果的인 特許保護를 可能케 함으로써 遺傳工學技術을 促進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醫藥, 영양, 환경에 관한 우리 文明의 時急한 問題를 解決하는데 遺傳工學分野가 重要함을 立法, 判例 및 特許廳審決에서 考慮할 것이 期待된다.

特許保護를 可能케 함에는 遺傳工學分野의 特性을 考慮할 必要가 있을 것이며 이分野의 出願人은 寄託된 微生物을 一般人이 自由로 이 利用할 수 있고 또 一般人에게는 有利하지만 이들 微生物에 의해서 나타나는 物質的 價値에는 결코 상응하지 않는 그러한 條件의 結果로 이미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